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마약 불법유통 관리 및 재확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의약품 품질심사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입식품 구매 대행 관리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6급 8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8명(6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5.~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에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총괄 및 위해정보 관리·운영

18.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을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으로 한다.

총리령 제14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45”를 “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4”를 “642”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2”를 “12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0”을 “658”로 하고, 일반직 계 “659”를 “657”로 하며,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19 다음에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8”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2”를 “12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35”를 각각 “434”로 하고,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8”을 “17”로 하며,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11”을 “112”로 하고,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33”을 “23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12”를 각각 “905”로 하고,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 “105”를 “104”로 하며,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11”을 “109”로 하고, 행정서기·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138”을 “137”로 하며, 행정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60”을 “59”로 하고, 보건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4”를 “192”로 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2명,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 및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 -----.
②·③ (생략) 총리령 제14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총리령 제14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 8명)으로서 제28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수직렬로 전환된 정원(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45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 삭제 >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645	643	-2
·	·	·	
·	·	·	
일반직 계	644	642	-2
·	·	·	
·	·	·	
행정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약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2	121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삭 제>	-1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0	658	-2
일반직 계	659	657	-2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	<신 설>	8	+8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8	<삭 제>	-8
행정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약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22	121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삭 제>	-1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35</u>	<u>434</u>	-1
일반직 계	<u>435</u>	<u>434</u>	-1
•	•	•	
•	•	•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u>18</u>	<u>17</u>	-1
•	•	•	
•	•	•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u>111</u>	<u>112</u>	+1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u>233</u>	<u>232</u>	-1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12</u>	<u>905</u>	-7
일반직 계	<u>912</u>	<u>905</u>	-7
•	•	•	
•	•	•	
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 주사 · 의료기술주사 또는 전산주사	<u>105</u>	<u>104</u>	-1
•	•	•	
•	•	•	
행정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약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111</u>	<u>109</u>	-2
•	•	•	
•	•	•	
행정서기 · 식품위생서기 또는 의료기술서기	<u>138</u>	<u>137</u>	-1
•	•	•	

행정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 ·	<u>60</u> · ·	<u>59</u> · ·	-1
보건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 ·	<u>194</u> · ·	<u>192</u> · ·	-2